

大學圖書館大會發表論文

藏書의 自然減少는 어떻게 處理해야 하냐

高 聖 秀

一. 머릿말

圖書館 하면 一般的으로 資料(藏書) 場所(建物) 司書(職員) 세 가지로構成되어 진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各級 圖書館도 漸次 發展하여 좋은 建物을 마련하며 職員도 專門教育을 받은 司書가 奉仕를 하게 되고 量을 為主로 하든 것이 質를 重視하게 되여 靜에서 動으로 即 “살아 있는 圖書館” “活用하는 圖書館” 으로 그 面貌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圖書館이 活用하여 짐에 따라 여러 가지 問題點이 惹起 되는데 그 중에서도 管理者나 運營者가 다 같이 부닥치는 重大한 問題의 하나가 藏書의 減少를 如何히 處理 하느냐 하는 問題라 하겠습니다.

이 問題는 圖書館資料의 損失과 消耗問題란 議題로서 1964年度 大學圖書館大會에서 中央大學報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鄭馳模 先生任이 學術的인 面에서 깊이 있는 理論를 展開한바 있어 저는 다만 法律上으로 處理 할수 있는 方法을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같이 論議해 보고자 합니다.

二. 藏書의 自然減少란 무엇인가

藏書의 自然減少에 對하여는 각者마다 그 뜻을 달리 하리라 믿습니다. 嚴格한 意味에서 볼때 圖書가 消耗品이 아닌 以上 自然히 減少 될수는 없다고 보겠으나 그러나 이 自然減少란 그러한 뜻이 아니고 圖書館에 있어서의 資料의 減少 問題이니 여러 가지 뜻으로 解釋할수 있을 것입니다.

即 毀損, 亡失(紛失) 消耗와 時效가 지난 文獻의 價值가 없는 圖書를 뜻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1. 毀損은 (1) 圖書의 内容의 一部가 切取되였거나 脱落 되었을 境遇와 (2) 害蟲이나 動物(취) 또는 風化作用으로 因하여 圖書가 損傷 當했을 境遇를 들수 있으며 2. 亡失은 (1) 讀者가 紛失하는 境遇와 圖書館에서 長期間에 결처 不知中에 不在나 不明 圖書가 나타 나거나 盜難事故를 들수 있으며 3. 消耗는 讀者의 利用度가 頻繁한 圖書의 破損되는 境遇를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때 圖書館에서 教育目的이나 研究資料에 또는 教養娛樂을 위하여 閱覽에 供하여 질수 없거나 價值가

없는 圖書를 總網羅하여 自然減少라 할수 있겠습니다.

三. 處理方案

이 問題가 圖書館 運營의 合理化를 위하여 오래 前부터 議論 되어온 重要性이 切實함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平素부터 많은 關心事が 되어 잘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리 論議하게 된趣旨는 어떤 問題를 提示 하여 여러분과 더불어 좋은 解決策을 摸索하는 共同의 廣場을 마련 해 보자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私立 大學에서는 總學長의 裁可를 얻어 減少되는 圖書를 圓滿히 處理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마는 餘地의 大多數의 國公 私立 大學에서는 이 問題가 아직 重大한 問題點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私立에서는 管理者の 裁可를 얻으려는 問題는 簡單히 解決 되어지나 그렇지 못할 境遇는 國公立學校의 境遇와 같이 法에 依한 處理 問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즉 國家에서 制定한 現行法을 適用하여 問題를 處理하든지 아니면는 法規 制定을 위하여 어떤 方案을 摸索하지 않으면 않되겠습니다.

첫째 現行法上으로 處理 할수 있는 方法과 둘째 法規 制定의 可能性 與否를 考慮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四. 現行法上으로 處理 할수 있는 方案

本法은 國家의 物品의 取得保管使用 및 處分에 關하여 基本的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物品의 效率의이며 適正한 管理를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하는 物品管理法(以下法이라함) 第1條(目的)을 볼때 圖書도 當然히 이 法의 適用을 받는 것입니다. 故로 이 法에서 減少되는 圖書를 處理 할수 있는 方案을 찾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自然減耗

法第34條(自然減耗) ① 物品의 長期保管이나 運送其他 不可避한 事由로 因하여 생기는 減耗를 自然減耗로 하여 整理한다.

② 自然減耗로 整理할수 있는 物品의 種類, 品名 및 自然減耗의 率에 關하여는 閣處으로 定한다. 라고 하

였고 閣令 即 物品管理法 施行令(以下 物令이라함) 第39條(自然減耗로 整理 할 수 있는 物品과 自然減耗率) ①法第34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自然減耗로 整理할 수 있는 物品은 다음 각號의 一에 該當하는 物品에 限한다. 1. 葉煙草 2. 盆 3. 穀物로 하였고 또한 軍需品管理法 施行令 第39條에는 自然減耗로 整理 할 수 있는 物品이 1. 穀物 2. 盆 3. 油脂類 4. 挥發性化學品으로 限定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圖書는 自然減耗로 規定이 되여 있지 않고 있으며 物品의 性質上 散物인 物品에 限하고 있으면서도 肥料 石炭 세멘트等은 散物이며 많이 使用 되여지고 各處로 運搬되여 지는 物品인데 어째서 上記 몇몇 物品만이 自然減耗로 規定하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法精神上 圖書는 減耗로 認定되여지고 있지 않으나 奉仕 活動이 複雜 할 수록 圖書利用者가 많으면 많을 수록 減少되는 것은 事實上의 問題이니 不文律이나 內規로서 自然減耗로 定하여 處理하는수 밖에 없읍니다.

2. 不用의 決定이나 廢棄問題

法第30條(不用의 決定等) ① 各中央官署의 長은 使用 또는 處分할 必要가 없는 物品中 管理轉換 또는 分類轉換에 依하여서도 適切한 處理를 할 수 없는 物品이 있을 때에는 그 物品에 對하여 不用의 決定을 할 수 있다. 但 閣令으로 定한 物品에 對하여는 物品管理官이 그 決定을 할 수 있다. ② 各中央官署의 長 또는 物品管理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不用의 決定을 한 物品中 賣却하는 것이 國家에 不利하거나 不適當하다고 認定되거나 또는 賣却 할 수 없는 物品이 있을 때에는 이를 廢棄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使用 할 수 없는 物品의 不用의 決定이나 廢棄를 할 수 있게끔 하였고 法第30條 第1項 但書閣令으로 定한 物品이란 物令 第35條(物品管理의 不用의 決定을 할 수 있는 物品) 法第30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物品管理官이 不用의 決定을 할 수 있는 物品은 다음 각號의 一에 該當하는 物品以外의 物品으로 한다. 一.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機械와 重要한 器具 二. 其他 所屬 中央官署의 長의 指定한 物品하여 不用이나 廢棄할 수 있는 物品이 指定되여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毀損이나 時效가 지난 文獻的 價值 없는 圖書는 이값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不用의 決定이나 廢棄를 할 수 있습니다. 萬一에 物令 第43條 二 其他 中央官署의 長의 指定하는 物品에 圖書가 說當 되여는 物令 第36條(不用決定의 承認申請) 物品管理官은 前號의 物品에 對하여 不用의 決定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事項을 明白히 하여 所屬 中央官署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라고 하였으니 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 承認을 얻으려는 物品管理官이 不用이나 廢棄 할 수 없는 物品도 不用決定이나 廢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紛失圖書를 除外한 減少되는 圖書는 當然히 處理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 實例로서 國立大學인 忠北大學 圖書館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問題視되는 紛失圖書는 法上으로 處理하는 方法이 없이 다만 管理不充分이란 責任下에 貸出者가 辨償 할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法第39條 ①…物品管理에 關한 事務를 行하는 公務員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서 任務에 違背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國家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따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辨償의 責任이 있다고 하였고 同 ②…物品의 出納保管을 하는 者가 그 保管에 屬하는 物品을 亡失하거나 毀損 하였을 境遇에 善良한 管理者の 注意를 懈怠히 하지 아니한 證明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따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辨償의 責任이 있다 라고 하였으니 物品管理公務員은 物品管理法 第20條에서 物品의 管理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本法其他 物品의 管理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遵守하는外에 善良한 管理者の 注意로서 事務에 從事하여야 한다. 라고 規定하여 이른바 善良한 管理者の 注意義務를 要求하고 있다. 善良한 管理者の 注意의 程度는 當該 職務를 擔當 하거나 또는 그 職位에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에게나 普通 要求되는 注意이며 이러한 注意를 缺할 때에는 過失이 되여 辨償의 責任이 있는 것이나 善良한 管理者の 注意를 懈怠히 하지 아니한 證明을 하며는 辨償의 責任은 없을뿐만 아니라 紛失圖書의 處理 問題도 自然히 解決 될 것입니다.

그러면 善良한 管理者の 注意가 있었는데요 圖書가 紛失된 境遇는 어떠한 境遇인가 即 圖書를 貸出하여 貸出者가 行方不明이 되었거나 死亡으로 因하여 圖書가 不明이 되었거나 하여 退納 不可能 狀態에 노여진 境遇와 盜難을 當하였다를 境遇等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境遇 行方不明이나 死亡 혹은 盜難의 證明이나 確認을 該當機關(法院이나 警察機關長)에서 얻어 이 證明書나 確認書를 根據書類로 하여 紛失圖書는 法第39條 ②에 依據하여 處理되여지며 責任도 免하게 되는 것입니다.

五. 法規制定의 可能性 與否

I. 1962年11月14日 調達廳訓令第61號의 調達廳 圖書管理規程 제1조(목적) 이훈령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조(통칙) 조달청에서 도서의 관리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1962년1월20일 법률 제992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조달청물품관리에 관한 훈령 및 기타의 법령에 정한 것 이외는 이훈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하여 法의 目的과 法規制定

의根據를 明示하고 不用圖書의 決定이나 廢棄處分을 할 수 있음은勿論合理的인 圖書管理를 할 수 있게끔 詳細히 法規가 制定되어 있고,

2. 1964년 3월 10일 遷信部令 第249號의 遷信官署 物品管理規則은 第1條(目的) 이 令은 物品管理法施行令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遷信官署에서 物品을 取得·保管·使用 및 處分함에 必要한 特例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라고 하여 法의 目的과 制定된 法의 根據을 異하고 同法 第5條(物品의 分類) ① 物品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遷信官署의 事業用品을 다음과 같이 細分類한다 라고. 하고 5項에 圖書가 있으며 圖書는 消耗品圖書와 備品圖書로 區分하여 圖書管理에 圓滿을 期하는 것을 볼때 이 두法規가 다 物品管理法을 基本法으로 하여 制定된 것임에 文教部傘

下에 圖書館이나 藏書利用하는 讀者의 數를 考慮하여 볼때 每年 圖書館大會時마다 莫然한 藏書廢棄規則 制定을 要求할것이 아니라 보다 具體的인 圖書管理規則案을 作成하여 文教部에 建議하여 빠른 時日內에 圖書管理規則이 마련되어 物品管理法에서의 여러 가지 未備點을 없애면 合理的인 圖書館運營을 期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六. 끝 말

關心이 많은 이 議題의 核心을 여러분에게 充分이 말씀 드리지 못함을 罪悚하게 生覺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意見交換을 하시여 適正한 方法으로 藏書의 自然減少의 處理問題가 解決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發表者: 廣北大學校圖書館)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相互貸出問題

高 雄 濟

目 次

- 一. 머리말
- 二. 相互貸出의 意義 및 目的
- 三. 相互貸出의 責任과 範圍
- 四. 相互貸出의 方法
 - 1. 申請上의 注意
 - 2. 準備
 - 3. 貸出手續
 - 4. 輸送
- 五. 相互貸出에 關한 問題點
 - 1. 綜合目錄의 整備
 - 2. 不均衡問題
 - 3. 申請書記載事項 不完全問題
 - 4. 經費問題
 - 5. 一般的인 難點
 - 6. 複寫資料化 問題

一. 머리말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資料相互貸出問題는 大學圖書館相互協助라는 커다란 問題 속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圖書館協助問題는 오늘날 圖書館 育成과 發展에 적지 않은 比重을 가지는 것으로, 資料“센터”的 設置新

聞의 分擔保管 카—드 目錄의 集中作成에 따르는 印刷 카드의 利用을 普及 推進하는 問題와 더부터 圖書館相互貸出問題가 自然 論議 되는 것이다.

大學圖書館相互利用을 두 가지 면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他校 學生과 教職員이 直接 相對 圖書館에서 利用하는 境遇와 他 大學圖書館에서 資料를 郵送 받아서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間接利用의 두 가지 境遇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투고자 하는 問題는 後者의 間接利用의 形態인 바, 大學圖書館相互貸出이 圓滿히 이룩 될 뿐만 藏書構成面에서 充實하고 優秀한 大學圖書館을 中心對象으로 한 綜合目錄의 具現이 무엇보다도 先行되어야 하고,各大學圖書館의 頒則 및 閱覽規定에 當該館員은 아무런 隘路 없이 他圖書館과의相互奉仕에 臨할수 있도록 規制를 마련 하도록 促求하는 바이다.

저는 오늘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 原則論에 立脚하여 先進國家의 實例를 들어서 몇 가지 段階로 問題點을 함께 提示 論議하고자 한다.

二. 圖書館相互貸出의 意義 및 目的

相互貸出이라 함은 利用者個人을 위한 一圖書館이 他圖書館에서의 資料의 貸出措置를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圖書館相互間의 協助를 위한 館外貸出制度이기도 하다.